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에게 자금 지원〉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85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자금 지원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6. 25.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주택구입, 농지·어장 및 시설·장비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유실수·조경수·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실정인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과 초기 생활비 부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과 도시민의 귀농 진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농촌의 유희농지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

하고,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제15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자금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유실수·조경수·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수·유실수·조경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융자알선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융자 등-----.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주택구입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리(低利)로 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²⁾을 통하여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 1)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은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농업자금 저리지원에 따른 이차자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융합자금, 농촌주택개량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농업자금이차보전 융자규모 및 이차액]

(단위: 백만원)

자금명	융자 규모(신규대출)					이차액				
	'22	'23	'24	'25	'26	'22	'23	'24	'25	'26
총 소요예산	7,652,100	8,770,845	9,016,445	8,843,997	8,925,025	280,299	451,942	557,722	681,878	729,661
⑧ 귀농농업창업및주택 구입지원자금('09)	300,000	259,000	181,300	150,000	150,000	15,810	32,249	41,373	41,114	39,980

을 지원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유실수·조경수·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수확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해당 기간에도 묘목 구입, 비료·농약,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영농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신규로 영농을 시작하는 귀농업인의 경우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특히 귀농 초기에는 영농소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농비와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귀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만을 별도의 융자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의 우려가 있음.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영농자금 부담이 큰 문제는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농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설원예·축산 등 다른 영농분야도 시설 설치 등에 상당한 초기 자금이 필요할 수 있음.

또한 귀농가구는 채소, 논벼, 과수, 특용작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물의 생육기간만을 기준으로 특정 귀농업인에

계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경우 다른 영농분야와의 지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별도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귀농가구의 작물별 재배 현황]

(단위: 가구, %, m²)

재배 작물	2024년			2025년		
	가구 수	구성비	평균 재배면적	가구 수	구성비	평균 재배면적
채소	2,301	42.8	1,337	2,328	44.5	1,617
논벼	1,730	32.2	3,616	1,648	31.5	3,684
과수	1,675	31.2	1,794	1,609	30.8	1,918
특용	1,310	24.4	1,015	1,259	24.1	974
두류	852	15.9	1,653	729	13.9	1,776
서류	781	14.5	749	712	13.6	719
맥류·잡곡	558	10.4	1,448	518	9.9	1,468
화훼	139	2.6	1,668	103	2.0	1,563
기타	397	7.4	2,361	410	7.8	2,716
합계	5,373	100.0	3,282	5,231	100.0	3,439

* 귀농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료만 이용하여 집계함

* 한 가구에서 2종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각각 집계하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귀농어·귀촌인통계」, 2026. 6. 25., p.9.

둘째, 현행 귀농인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융자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 구입, 농업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농식품 가공·제조시설 등 농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므로, 장기생육형 작물의 재배에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낮은 것으로 보임.

농식품부도 현행법 제15조를 통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문 의 처
02)6788-5415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